

# 하남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25. 7. .

제출자 : 하남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남시 어린이교통공원의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함(안 제2조)
- 다.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이용시간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마. 이용방법을 명확히 함(안 제7조)
- 바. 운영 및 관리의 위탁 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(안 제11조)
- 사. 자원봉사자 배치를 규정함(안 제15조)

## 3. 제정안: 덧붙임

## 4. 관계법령 발췌서: 덧붙임

## 5. 신·구조문 대비표: 해당없음

## 6. 예산수반 사항: 덧붙임(비용추계서)

## **7. 입법예고 결과**

가. 예고기간: 2025. 5. 13.~2025. 6. 2.(20일간)

나. 의견내용: 의견없음

## **8. 부서협의 결과**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의견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의견없음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의견없음

## **9. 참고사항: 해당없음**

## **10. 관련부서: 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**

## 하남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통안전법」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로서 하남시 어린이교통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시설의 명칭은 “하남시 어린이교통공원” (이하 “교통공원” 이라 한다)이라 하고, 위치는 하남시 조정대로 111(풍산동 537)에 둔다.

제3조(시설)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교통공원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.

1. 실내교육장 : 차량 등 교통조형물, 영상시설 등
2. 실외교육장 : 횡단보도, 인도, 차도, 교통신호기, 교통안전표지판 등
3. 그 밖에 시설 : 관리사무실, 창고 등

제4조(사업) 시장은 교통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
2.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
3.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

4.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5조(이용시간 등)** ① 교통공원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.

② 교통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

2. 동절기 12월~2월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,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**제6조(이용료 등)** 교통공원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하고,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경우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**제7조(이용방법 등)** ① 교통공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시장의 시설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실외시설은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날짜, 시간, 이용 인원, 단체명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이용의 제한)** 시장은 공익상 또는 교통공원의 운영·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
2. 음주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
3.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
4.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

**제9조(재산 및 물품관리)** ① 시장은 교통공원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괴·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교통공원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하남시 물품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10조(보험가입)** 시장은 교통공원의 재산과 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**제11조(관리 및 운영의 위탁)**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(이하 “수탁자“라 한다)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「하남시 사무 위탁 조례」를 따른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·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·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2조(수탁자의 의무)**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,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교통공원을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시장의 승인 없이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
③ 수탁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지도·감독)**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교통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**제14조(위탁의 해지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2.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3.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
4. 수탁자가 제12조를 위반하였을 경우

**제15조(자원봉사자 배치)**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 「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

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부서명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공원녹지과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입<br>안<br>자 | 부서장<br>직위 · 성명   | 공원녹지과장<br>홍 영 택         |
|             | 팀장<br>직위 · 성명    | 공원운영팀장<br>이 성 희         |
|             | 담당자<br>성명 · 전화번호 | 전 성 민<br>(031-790-5145) |

## 관계법령 발췌서

1

### 「아동복지법」 시행령 제28조제1항

[시행 2025. 1. 1.] [대통령령 제34952호, 2024. 10. 22., 일부개정]

#### 제28조(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)

① 아동복지시설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8. 3. 6.>

② ~ ③ 생략

2

### 「교통안전법」 제23조제3항 내지 제5항

[시행 2024. 8. 17.] [법률 제19673호, 2023. 8. 16., 일부개정]

#### 제23조(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)

① ~ ② 생략

③ 국가등은 어린이,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신설 2009. 4. 22., 2016. 1. 19.>

④ 국가등은 어린이,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09. 4. 22., 2016. 1. 19.>

⑤ 제3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기준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09. 4. 22.>

### 3

#### 「교통안전법」 시행령 제19조의2

[시행 2025. 1. 1.] [대통령령 제34988호, 2024. 11. 12., 타법개정]

제19조의2(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) ① 국가 및 시·도지사등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, 노인 및 장애인(이하 이 조에서 “어린이등”이라 한다)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(이하 이 조에서 “교통안전 체험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설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. <개정 2016. 7. 19.>

1. 어린이등이 교통사고 예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통의 위험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영상장치 등 시설·장비를 갖추는 것
2. 어린이등이 자전거를 운전할 때 안전한 운전방법을 익힐 수 있는 체험시설을 갖추는 것
3. 어린이등이 교통시설의 운영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·횡단보도 등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맞게 배치할 것
4. 교통안전 체험시설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과 일치할 것

②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6. 7. 19.>

[본조신설 2010. 6. 29.] [제목개정 2016. 7. 19.]

# 비 용 추 계 서

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### 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하남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

### 나. 비용 발생 요인

- 시설 운영
  - 운영 : 직영(인건비) 또는 위탁(자치단체등이전 : 위탁사업비)
  - 시설 : 유지보수관리(일반운영비, 시설비및부대비)

## 2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 : 운영 및 관리의 위탁

### 나. 추계결과

(단위: 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2025년  | 2026년  | 2027년  | 2028년  | 2029년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총 소요액(시비100%)    |                | 12,000 | 62,000 | 63,000 | 64,000 | 65,000 |
| 어린이교통공원<br>운영 사업 | 인건비<br>(위탁사업비) | 10,000 | 52,000 | 53,000 | 54,000 | 55,000 |
|                  | 일반운영비          | 2,000  | 10,000 | 10,000 | 10,000 | 10,000 |
|                  | 시설비 및<br>부대비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
### 다. 재원조달방안: 2025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

- 어린이교통공원 운영

(단, '25년의 경우 시설준공 후 10~11월 2개월분 운영비용 반영)

- 인건비(위탁사업비) : 직영 인건비 등 또는 위탁사업비 10,000천원
- 일반운영비, 시설비 및 부대비 : 운영교구 등 구입, 시설유지보수 2,000천원

## 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: 해당없음

## 4. 작성자: 안전환경국 공원녹지과장(홍영택)

### 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: 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| 1차연도   | 2차연도   | 3차연도   | 4차연도   | 5차연도   | 계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세 입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 |
| 세 출                      | 12,000 | 62,000 | 63,000 | 64,000 | 65,000 | 266,000 |
| 101 인건비<br>(308 자치단체등이전) | 10,000 | 52,000 | 53,000 | 54,000 | 55,000 | 224,000 |
| 201 일반운영비<br>401 시설비및부대비 | 2,000  | 10,000 | 10,000 | 10,000 | 10,000 | 42,000  |
| 재원 조달              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 |
| 의존<br>재원                 | 소 계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조금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교부세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 |
| 자체<br>수입                 | 소 계    | 12,000 | 62,000 | 63,000 | 64,000 | 266,00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세    | 12,000 | 62,000 | 63,000 | 64,000 | 266,00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외수입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 |
| 지방채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 |
| 기 금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 |
|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 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 |
| 기 타<br>(채무부담, 민자 등)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 |